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무면허의료행위 소개·알선 규제 및 고의적
환자 처벌〉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801호)
- 서명옥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605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4
1. 개정안의 내용	4
2. 검토의견	8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5

I. 개요

1)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안

1.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5. 12. 31.
- (3) 회 부 일 : 2026. 1. 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공받는 행위부터 소개·알선 등의 행위까지 금지하여 음성적인 불법 의료 관행을 뿌리뽑고자 합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연루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주사이모’ 사건은 무면허 시술자와 이를 이용하는 수요가 결합된 구조 속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현행법이 시술 행위 자체의 금지에 그쳐, 주변의 소개·알선 구조와 소비 단계까지 충분히 규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용하는 것뿐 아니라 소개·알선·유인·중개·광고 등의 행위까지 규율함으로써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고자 합니다. 건전한 의료 질서를 교란하는 수요와 공급의 고리를 모두 끊어내려는 것입니다(안 제27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

2) 서명옥의원 대표발의안

1.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명옥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2. 5.
- (3) 회 부 일 : 2026. 2. 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방송인들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의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한 자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이에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받은 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둌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6항 신설 및 제90조).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정안의 내용

- 민형배의원안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소개·알선·유인·중개 또는 광고하거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위한 의약품 및 장소·시설·장비·자금·차량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누구든지 자신이 받으려는 의료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자진신고 및 수사협조 등을 한 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6항·제7항 신설, 제87조의2 및 제89조 등).
- 서명옥의원안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받은 환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6항 신설, 제90조).

현 행	민형배의원안	서명옥의원안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 ⑤ (생략) <u><신 설></u>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무면허 의료행위(의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누구든지 자신이 받으려는 의료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하는 의료행위 또는 의료인

현행	민형배의원안	서명옥의원안
<신설> 제87조의2(벌칙) ① (생략)	<u>료인이 아닌 자가 하는 의료행위 또는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 사항 외에서 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도록 소개·알선·유인·중개 또는 광고하는 행위</u> 2. <u>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의약품 및 장소·시설·장비·자금·차량을 제공하는 행위</u> 3. <u>그 밖에 무면허 의료행위의 소비자 모집·관리 및 이용요금 수수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운영하거나 해당 업의 운영에 관여한 행위</u> ⑦ <u>누구든지 자신이 받으려는 의료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u> 제87조의2(벌칙) ① (행과 같음)	<u>이 자신의 면허 사항 외에 하는 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u>

현행	민형배의원안	서명옥의원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신설> 3의2. ~ 3의4. (생략) 4.·5. (생략) 제89조(벌칙)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1. (생략) <신설> 2. ~ 4. (생략) <신설>	② ----- ----- -----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27조제6항을 위반한 자 3의3. ~ 3의5. (현행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와 같음) 4.·5. (현행과 같음) 제89조(벌칙) ① ----- ----- -----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27조제7항을 위반한 자 2. ~ 4. (현행과 같음) ② <u>상습적으로 제1항 제1호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u>	

현행	민형배의원안	서명옥의원안
<신설>	제90조의3(책임의 감면) 제89조제1항제1호의2의 죄를 범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할 수 있다. 1.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을 자진하 여 신고하거나 관련 수사에 협조한 경우 2.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도록 강요된 경우	제90조(벌칙) ----- ----- ----- ----- ----- ----- ----- ----- ----- ----- ----- ----- ----- ----- -----제27조
제90조(벌칙) 제16조제1 항·제2항, 제17조제3 항·제4항, 제17조의2 제1항·제2항(처방전을 수령한 경우만을 말한 다), 제18조제4항, 제21 조제1항 후단(제40조의 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 조의2제1항·제2항, 제 21조의3제1항 후단, 제 22조제1항·제2항(제40 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제4항, 제26조,		

[illegible]

2. 검토의견

1) 무면허 의료행위의 소개·알선·유인·중개·광고 등의 금지

□ 현행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특히, 제22대 국회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문제²⁾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료법」을 개정(법률 제21111호, 2025.11.11. 개정)하여 무면허 의료행위 또는 이를 교사하여 사람을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한 바 있으며, 동 개정 조항은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음.³⁾

□ 최근 이른바 ‘주사이모’와 관련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이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1)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 등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7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

2) “대학병원서 버젓이 ‘대리수술’자행…수술실 CCTV 설치 유효성 ‘논란’”, 메디코파마뉴스, 2024.9.12.

3) 「의료법」 [법률 제21111호, 2025.11.11., 일부개정] 제87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
2. 제2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죄

[시행일: 2026. 2. 12.]

4) 연합뉴스, “경찰, 방송인 불법 방문진료 의혹 ‘주사이모’ 압수수색”, 2026.1.7.

하는 것과 달리, ‘주사이모’와 같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외부에서 행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이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연결시켜주는 ‘소개·알선·유인·중개·광고’ 등의 행위가 필요함.⁵⁾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서는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금지하면서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⁶⁾

□ 민형배의원안은 현행법에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소개·알선·유인·중개·광고 등의 행위를 규정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의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의료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알선하거나 그 시술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상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⁷⁾⁸⁾⁹⁾ 「형법」에서는

5) JTBC, “‘박나래, ‘000’에게도 ‘주사 이모’ 소개’...‘그알’ 방송”, 2026.1.23.

중앙일보, “‘주사이모’는 병산의 일각?...“합법인 줄” 멘붕 빠진 사람들”, 2026.1.3.

6)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8) 대법원 1988.3.22.선고 87도2585 판결 중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부동산소개업자로서 부동산의 등기명의수탁자가 그 명의신탁자의 승낙없이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불법영득하려고 하는 점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도와주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매수할 자를 소개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면 이러한 부동산소개업자의 행위는 횡령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

공범에 대한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 법원이 해당 행위를 방조죄로 보아 중범으로 판단할 경우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과 같이 특정 범죄의 소개·알선·유인 등을 별도의 범죄로 규정할 실익이 있으며, 이러한 규정을 둔 입법례도 존재함.¹⁰⁾¹¹⁾

9) 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도10240 판결 중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고,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중략)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최●●가 안●● 등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 사실을 알면서 2007. 3. 30.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대하여 줌으로써 안●● 등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형법상 방조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1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의2(보험사기행위의 알선·권유 등의 금지)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34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나 원시코드 등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4. 대상기관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이하 생략)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 ②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 제27조제6항제3호의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운영하는 것은, ①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운영하거나, ② 무면허 의료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운영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①의 경우 이미 현행법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¹²⁾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②의 경우 개정안 제27조제6항제1호에 의해 금지되는 것이므로 중복하여 규정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임. 특히 개정안은 해당 업의 운영에 관여한 행위까지 금지하고 있는데, ‘관여’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

- 「형법」 제87조제3호¹³⁾에서도 범죄의 구성요건에 ‘관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 관여의 대상인 ‘폭동’은 구체적인 행위로서 ‘관여’의 해석 범위가 넓지 아니함.

11)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8119 판결 일부,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가 제1항에서 ‘유사행위’를 금지하는 외에, 제2항에 유사행위와 관련한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취지는, 제26조 제1항의 ‘유사행위’에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유사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사업 운영을 근원적이고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내용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의 각 행위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위반죄의 공범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행행위로서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위반죄의 공범이 성립하고, 같은 조 제2항 위반죄는 이에 흡수된다. 이와 달리 해석한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유사행위에 공모·가담하더라도 같은 항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그보다 형이 가벼운 같은 조 제2항 위반죄로만 처벌할 수 있게 되므로, 다른 행위를 하여 제26조 제1항의 공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에도 맞지 않다.”

1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2.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3.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13)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하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둘째, 개정안은 자진신고, 수사협조, 강요된 행위의 경우 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자진신고, 수사협조, 강요된 행위의 의미가 불분명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2) 무면허 의료행위를 알면서도 받은 자 처벌

- 민형배의원안 제27조제7항 및 제89조는 누구든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서명옥의원안 제27조제6항 및 제90조는 누구든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두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수요를 제한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행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벌이 있어야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대상자인 환자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는 현행법의 태도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점에서 환자, 의료계 및 정부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무면허 의료행위의 행위자와 환자는 대항범¹⁴⁾ 관계에 있고,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자신에게 규정된 구성요건 행위만으로 처벌되며, 상대방의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 총칙상의 공범이 적용되지 않음.¹⁵⁾ 현행 「의료법」에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환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한 자가 처벌받더라도 이를 받은 환자는 처벌되지 아니함.
- 참고로, 최근 연예인의 ‘주사이모’ 사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환자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보건복지부의 발언이 기사화된 바 있는데,¹⁶⁾ 이는 환자의 행위가 단순히 의료행위를 받는 수준을 넘어, 의료법 위반임을 인지하고도 범죄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예외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인 것으로 이해됨. 다만, 대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판례는 아니지만 대항관계에서 일방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는 경우 죄형법정주의에 기반하여 이러한 예외도 인정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임.¹⁷⁾¹⁸⁾

14) 대항범(對向犯):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두 명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마주 보는 방향에서 공동의 목적을 향해 행위를 해야 하는 범죄(예: 뇌물죄의 수수자 - 공여자, 장물취득죄의 장물범 - 취득자 등)

15) 대법원은 대항범 관계에서 한쪽만 처벌하도록 법이 만들어졌다면, 처벌 규정이 없는 상대방은 형법 총칙상의 공범(교사·방조) 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봄(대법원 2009.6.23. 선고 2009도544 판결 등).

16) 조선일보,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 확산... 복지부 “환자가 의료법 위반 알았다면 공범””, 2025.12.8.
YTN, ““알고 있었다면 처벌 가능”... 박나래, 불법 의료 행위 공범 논란 휩싸여”, 2025.12.8.
시사저널, “박나래 ‘주사 이모’ 의혹에 의료계 반발... 정부 “환자도 처벌 가능””, 2025.12.8.

17)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중

“매도, 매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항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매도인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의 매도행위는 그와 대항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매수범행에 대하여 공범이나 방조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중략)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인이 의약품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염산날부편을 일반인들을 상대로 판매한다는 정을 알면서 공소외인에게 염산날부편을 판매함으로써, 공소외인이 염산날부편을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하도록 공급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라는 점에 관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정범인 공소외인의 판매목적의 염산날부편 취득행위라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공소외인에게 염산날부편을 판매, 공급함으로써 공소외인의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의약품의 판매할 수 없는 공소외인이 판매의 목적으로 의약품의 취득한 범행과 대항범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의 공소외인에 대한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하여는 형법총칙상 공범이나 방조범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을 공소외인의 범행에 대한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또한, 포상금 상향을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의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데,¹⁹⁾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환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둘 경우, 환자에 의한 신고가 축소될 수 있으므로 두 개정안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무면허 의료행위는 현행 의료법, 보건범죄단속특별법으로 처벌 가능하며, 최대 형량도 개정안보다 높아 개정의 실익이 적음.

개정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의료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무면허 의료행위로 사람을 - 상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7천만원 이하 벌금 - 중상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보건범죄단속특별법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18) 류가영, ‘알선대가 이익제공자의 처벌 필요성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65권 제4호, 2024.11.
- 대법원은 각칙상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총칙상 공범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함. 필요적 공범이라 하더라도 대향자 일방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이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한 것이므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취지임(2001도 5158 판결).
- 이에 대하여 처벌규정이 없는 대향자에 대해서도 가담 정도에 따라 총칙상 공범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학설이 있음. 각칙상 처벌규정이 없는 대향자가 단순히 구성요건 실현에 필요한 최저한으로 가담한 경우가 아니라, 적극적인 가담행위를 하여 독자적 불법이 인정될 정도에는 처벌규정이 없어도 총칙상 공범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는 것임(이주원, 형법총론 제3판, 2023)

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5398호)

2) 법무부 (신중검토)

-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공받는 행위부터 소개·알선 등의 행위까지 금지하여 불법 의료 관행을 근절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의약품·장소·시설·장비·자금·차량을 제공한 경우에는 가벌성이 있을 것이나, 실무상 선의의 제공자도 있을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보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수사협조자 등 형벌감면제도는 보호법익이 매우 중한 소수의 법률에서만 한정적으로 인정된다는 점, 자진신고, 수사협조, 강요된 행위의 의미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임의적 책임감면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자진신고는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인지, 아니면 「형법」상 자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함(‘자수’를 의미한다면 이미 「형법」상 임의적 감면 규정 있음).²⁰⁾
 - ‘관련수사에 협조’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자본시장법」은 협조 행위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음).²¹⁾

20)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의2(형벌 등의 감면) ①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가 수사기관에 자수(증권선물위원회에 자진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수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위반행위로 제429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 대하여 그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정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의 의미가 위력이나 협박에 의한 것인지, 고용주 등이 지시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거부할 수 없어서 받게 된 것인지 불명확하며, ‘그 밖의 관계’도 의미가 명확하지 않음.

3) 부산광역시 (신중검토)

- 무면허 의료행위는 중대범죄로서 어떠한 관계적 사유로도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여서는 아니됨.

4) 대한의사협회 (찬성)

- 개정안의 취지에 찬성하나, 악의적·무분별한 고발로 인한 정상적인 의료행위 위축, 방어진료 조장, 불필요한 행정부담, 의료현장의 혼란 및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 훼손 등 부작용을 고려한 신중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며, 신고 조사·처리 과정에서 의료전문가 단체(대한 의사협회)의 전문적 자문과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대한치과의사협회 (찬성)

- 무면허 의료행위의 수요와 공급의 고리를 동시에 차단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므로 개정에 찬성함.

6)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완필요)

- ☐ 의료인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적용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7)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찬성)

- ☐ 무면허 의료 이용 뿐 아니라 소개·알선·유인·중개·광고 등의 행위 까지 금지하여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고 건전한 의료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찬성함.

문 의 처
02)6788-5494